##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97

발의연월일: 2021. 8. 30.

발 의 자:서영교·오영환·민병덕

김교흥・김영호・김정호

이해식 · 장철민 · 이동주

한병도 · 김영배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3080<sup>+</sup>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음.

공공매입(수용)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이전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이연토록 하고 있음.

이에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 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임(제55조 의3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313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313호 도시재생 활성화	법률 제18313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①·② (생 략)	현물보상) ①·② (현행과 같
	<u>о</u> )
<u> &lt;신 설&gt;</u>	③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
	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